

광역도시계획

광역계획권

- 지정 : 국장, 도지사
- ① 둘 이상의 특별시·광역시·자치시·자치도·시 또는 군(전부 또는 일부)
 - ② 공간구조와 기능을 상호연계
 - ③ 환경 보전
 - ④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

광역도시계획

수립

기초조사 (강행규정)

공청회 14일전 1회 이상공고, 주민과 관계전문가

지방의회 시·도의회, 시, 군의회·시장, 군수

승인

협의 : (중앙)행정기관의 장 → 30일 이내 의견제시
 심의 : 중앙(지방)도시계획위원회

시·도지사 → 국장
 시장·군수 → 도지사

공고 열람

- ① 공고 :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
- ② 열람 : 30일 이상

도시·군기본계획

- ① 광역도시계획에 부합/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
- ② 도시·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
- ③ 5년마다 타당성 검토
- ④ 수립대상 : 특별시·광역시·자치시·자치도·시 또는 군(의무)
 ※수립제외가능지역 - ㉠ 수도권에 속하지X, 광역시와 경계X ⇒ 인구10만이하의 시·군
 ㉡ 관할구역전부 : 광역도시계획수립 시~

도시·군기본계획

수립

기초조사 (강행규정)

공청회 14일전 1회 이상공고, 주민과 관계전문가

지방의회 지방의회

승인

협의 : 관계행정기관의 장 → 30일 이내 의견제시
 심의 : 지방도시계획위원회

시장·군수 → 도지사

공고 열람

- ① 공고 : 특별시·광역시·자치시·자치도·시장 또는 군수
- ② 열람 : 30일 이상

도시·군계획

도시·군관리계획

입안

결정 고시

열람

기초조사 강행규정

주민 의견청취 공고·14일 이상 열람

의견청취 지방의회

협의 : (중앙)행정기관의 장 → 30일 이내 의견제시
 심의 : 도시계획위원회

원칙) 시·도지사, 대시장
 예외) 국장(해장)

열람 관할구역의 장(기간제한 없음)

◆ 도시·군관리계획의 내용

- 용도지역 : (도·관·농·자), 용도지구(경·방·보·취·개·고·복·방·특)
- 용도구역 : (개발제한구역, 도시자연공원구역, 시가화조정구역, 수산자원보호구역) 입지규제최소구역
- 기반시설의 설치 → (결정) : 도시군계획시설 → 도시군계획시설사업
 - ① 설치 :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. 관리 : 국가 - 중앙관서의 장, 지방자치단체 - 조례
 - ② 공동구·광역시설
 - ③ 미집행 도시·군계획시설부지
 - ㉠ 건축물의 건축·공작물의 설치 금지
 - ㉡ 개발행위허가(2년 경과)
 - ㉢ 매수청구(10년 경과)
 - ㉣ 실효 : 20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 : 시행자 → 실시계획 → 사업시행 → 준공검사
- 도시개발사업, 정비사업 : 개별법 ※ 3과4 = 도시·군계획사업
-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
 - ① 토지이용을 합리화·기능증진·미관개선, 양호한 환경 확보
 - ② 3년 이내 결정·고시(고시하지 않을 경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실효)
 - ③ 건축기준완화 :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제한 등